

이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팁4 - 지원 서비스

“저는 특수 주택 바우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제가 여기 살려면 이곳의 케이스 관리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케이스 관리 직원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곳의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유형의 주택 지원은 개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안된 지원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세입자는 임차 조건으로써, 그리고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특정한 지원 서비스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서비스가 본인의 필요와 장애에 부응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이 장애로 인해 발생한 특정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애에 관련된 서비스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이러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거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주 시에 거주 조건으로 현지 케이스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다면, 참여 거부로 인해 주거 및 주거 지원이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 관리 서비스 필요에 대해 주택 제공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 제공자가 생각하기에 현장 케이스 매니저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상호 협력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역 공정 주거 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공정 고용 및 주거부) 또는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00-669-9777](tel: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tel: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complaint-forms/>를 방문하십시오.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는 연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 사항: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MHAS, 지역 공정 주거 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은 U. 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주거 및 도시 개발 공정 주거 계획 프로그램)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60050-01-01)으로 제공됩니다.